



제422회국회(임시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비수도권 지역 소재 첨단산업분야 기업에 대한
조세감면·직업능력개발 지원 등〉

■ 송재봉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6965호)

2025. 2.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지방기업 및 지방근로자에 대한 조세 특례	3
2. 지방기업에 대한 인력양성 지원	8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송재봉의원 등 11인
2. 제 안 일 : 2024. 12. 26.
3. 회 부 일 : 2024. 12. 27.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첨단산업 분야의 산업계가 주도적으로 인재를 양성·활용·관리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하고, 우수인재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첨단산업의 발전과 국민경제에 이바지하기 위해 2024년 1월 제정되었음.

그런데 우리나라는 2000년대 초부터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집중현상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음. 최근 논의되고 있는 첨단산업 분야 지원정책 역시 수도권 지역에 집중될 가능성이 높아 비수도권 지역에 소재한 기업의 여건은 더욱 악화되어 지역경제 위기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됨.

특히, 대한상공회의소 연구결과(청년층의 지역 전입에 미치는 영향 연구, 2024.7.)에 따르면, 수도권의 총 사업체 중 첨단기업 비중은 2006

년 평균 12.7%에서 2021년 23.8%로 증가하는 동안 비수도권은 평균 9.0%에서 16.1%로 증가하는 데 그쳤음.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비수도권 지역에 소재하는 첨단산업 분야 기업에 대해 법인세 등 조세를 감면하고, 지방근로자에게 직업능력개발에 관한 정보 제공 및 지도·상담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원활한 인력수급을 위해 인력양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첨단산업 분야에서의 비수도권 기업 유치 및 우수인재 유입을 위한 유인책을 마련해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2 및 제22조의 3 각각 신설).

Ⅲ. 검토의견

1. 지방기업 및 지방근로자에 대한 조세 특례 (안 제22조의2 신설)

개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첨단산업 분야의 지방기업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 등 조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안 제22조의2제1항), 지방근로자에 대해서는 직업 능력개발에 관한 정보 제공 및 지도·상담을 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도록(안 같은 조 제2항) 하려는 것임.

[표 1]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22조의2(지방기업 및 지방근로자에 대한 조세 특례)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첨단산업 분야의 지방기업(「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에 본사 또는 주사무소를 둔 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그 밖의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 등의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첨단산업 분야의 지방근로자(지방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해당 지방기업이 소재하는 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하고 그 지역에 거주하는 근로자를 말한다)에게 직업능력개발에 관한 정보 제공 및 지도·상담을 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가. 지방기업에 대한 조세 특례 (안 제22조의2 제1항)

개정안 제22조의2제1항은 지방기업(수도권정비계획법상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에 본사 또는 주사무소를 둔 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그 밖의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 등의 조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임.

동 사항은 첨단산업 분야의 지방기업에 대한 조세감면 등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지방 소재 기업의 경쟁력을 보완하고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로서, 지방기업에 대한 적절한 지원을 통해 지역의 일자리를 확대하고 지역 경제의 활력을 높여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다만, 다음과 같은 점을 감안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첫째, 안 제22조의2제1항은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첨단산업 분야의 지방기업에 대하여 법인세 등의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 법이 첨단산업의 인재양성·활용·관리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조세감면의 목적 및 범위 측면에서 다소 일치하지 않는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둘째, 현행 「조세특례제한법」¹⁾, 「지방세특례제한법」²⁾은 해당 법률 및 그 법에서 정한 조약 및 법률에 따르지 않고는 조세특례를 정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실질적인 조세 감면의 효과를 위해서는 관련 세법의 개정이 추가적으로 필요한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산업통상자원부는 동법은 첨단산업의 인재양성 등에 그 목적이 있으므로 지방 첨단기업의 조세감면을 규정하는 것은 인재양성과 관련성이 낮으므로 곤란하다는 의견임.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는 개별법에서 조세특례의 적용 근거를 두는 것은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입법 취지에 배치되어 조세 지원 정책의 일관성·효율성을 저해하고, 개별법상 세제 지원에 대한 규정 여부와 관계없이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에 규정되어야 하므로 개정 실익이 없으므로 조세특례 관련 사항을 규정하는 것에 동의하기 어렵다는 의견임.

1) 「조세특례제한법」

제3조(조세특례의 제한) ① 이 법, 「국세기본법」 및 조약과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조세특례를 정할 수 없다.

1. 「소득세법」
2. 「법인세법」 (이하 생략)

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조(지방세 특례의 제한) ① 이 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및 조약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지방세법」에서 정한 일반과세에 대한 지방세특례를 정할 수 없다. (이하 생략)

나. 지방근로자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지원 (안 제22조의2 제2항)

개정안 제22조의2제2항은 지방근로자(지방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해당 지방기업이 소재하는 시·도에 주민등록을 하고 그 지역에 거주하는 근로자)에게 직업능력개발에 관한 정보제공 및 지도·상담을 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첨단산업 분야 지방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한 직업능력개발에 대한 지원을 통해 지역의 근로여건을 개선함으로써 지역 경제의 활력을 높이고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한다는 취지로 보이며,

특히, 현행법상 첨단산업³⁾에 해당하는 국가첨단산업 등의 경우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구인·구직 등 인적자원과 관련한 격차가 심각하여 지방에 소재한 기업 및 근로자에 대하여 우대하기 위한 차원에서 지원 근거 규정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보임.

3)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첨단산업”이란 기존 산업을 혁신하거나 새로운 사회적·경제적 가치가 있어 시장성, 파급효과, 성장 잠재력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대한 기여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산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을 말한다.

가.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국가첨단전략산업

나.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제7조제2항제2호가목의 첨단분야 중 같은 법에 따른 국가인적자원위원회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첨단분야

다.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산업

다만, 우선 동 항은 이 조의 제명인 ‘지방기업 및 지방근로자에 대한 조세 특례’와 달리 조세 감면이 아닌 직업능력개발에 대한 지원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항을 별도로 분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또한, 동 규정은 “첨단산업 종사하는 지방노동자”에 대하여 직업능력개발에 관한 정보 제공 및 지도·상담을 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서, 현행 「고용정책기본법」 4),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법」 5),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일반적인 또는 특정 분야 등에 대한 직업능력개발을 위하여 정보제공, 지도·상담과 함께 실험·실습 비용 지원, 교육과정 제공 등 다양한 지원이 가능한 여러 법률이 이미 제정되어 있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방소재 첨단기업 근로자에 대한 직업능력 개발 지원을 확대하려는 취지에 동의하나, 직업능력개발 관련 사항은 「고용정책 기본법」 등에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법 개정에도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임.

4) 제20조(직업능력개발의 지원)② 국가는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직업능력개발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지도·상담하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5) 제4조 (국가 및 사업주 등의 책무) ④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자는 직업능력개발훈련에 관한 상담·취업지도, 선발기준 마련 등을 함으로써 근로자가 자신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 (우선선정직종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직종(이하 “우선선정직종”이라 한다)에 대한 원활한 인력수급을 위하여 필요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1. 국가경제의 기반(基幹)이 되는 산업 중 인력이 부족한 직종
2. 정보통신산업·자동차산업 등 국가전략산업 중 인력이 부족한 직종
3. 그 밖에 산업현장의 인력수요 증대에 따라 인력을 양성할 필요가 있다고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직종

2. 지방기업에 대한 인력양성 지원 (안 제22조의3 신설)

[표 2]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22조의3(지방기업에 대한 인력양성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는 <u>첨단산업 분야의 지방기업의 원활한 인력수급을 위하여 산업계·대학·연구기관 등과 연계하여 인력양성을 지원할 수 있다.</u> ② 제1항에 따른 인력양성 지원의 대상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 제22조의3은 첨단산업 분야의 지방기업의 원활한 인력수급을 위하여 산업계·대학·연구기관 등과 연계하여 인력양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으로,

첨단산업 분야의 지방기업에 대한 산·학·연 등과 연계한 인력양성 지원을 통해 지방 소재 기업의 경쟁력을 보완하고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로서, 지역의 일자리를 확대하고 지역 경제의 활력을 높여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특히, 현행법상 첨단산업⁶⁾의 대상에 해당하는 국가첨단산업 등의 경

6)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첨단산업”이란 기존 산업을 혁신하거나 새로운 사회적·경제적 가치가 있어 시장성, 파급 효과, 성장 잠재력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대한 기여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산업으로서 다

우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구인·구직 등 인적자원과 관련한 격차가 심각하여 지방에 소재한 기업에 대하여 우대하기 위한 차원에서 지원 근거 규정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보임.

다만, 현행 법 제22조(첨단산업 지역인재 확보)⁷⁾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첨단산업 분야 지역인재 확보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지역 내 교육기관 등에 대한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현행법을 통해서도 산업계·대학·연구기관 등과 연계 등을 비롯한 인력양성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지방기업 및 산·학·연 연계 등을 강조하고자 하려는 경우 법 제22조의3을 신설하기보다는 현행 법 제22조를 개정하는 방안도 논의 가능할 것으로 보임.

산업통상자원부는 현행 법 제22조제1항제1호에 근거하여 기업의 투

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을 말한다.

가.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국가첨단전략산업

나.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제7조제2항제2호가목의 첨단분야 중 같은 법에 따른 국가인적자원위원회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첨단분야

다.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산업

7) 제22조(첨단산업 지역인재 확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첨단산업 분야의 지역인재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기업의 투자계획과 연계한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인재양성
2. 지역 내 교육기관과 기업이 연계한 인재양성
3. 지역 외 인력의 유입을 위한 육아·교육·의료 등 주거환경 조성
4. 그 밖에 첨단산업 분야의 지역인재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정부는 제1항의 사업에 대한 수요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사업이 신속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자계획과 연계하여 지자체, 교육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인재양성이 가능하며, 산·학·연 등과의 연계를 강조하기 위해서 “연구기관” 등을 추가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의견임.

문 의 처
02)6788-5460